

평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

의안 번호	405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1. 10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
법정의무기금인 자활기금을 조성하여 저소득 주민의 자립·자활을 촉진하기
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가. 기금의 재원과 용도를 정함(안 제2조, 제3조)
- 나. 기금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정함(안 제4조, 5조)
- 다. 지원금의 대여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6조)
- 라. 사회보험료 및 이자차액 보전, 신용보증을 정함(안 제7조, 8조, 9조)
- 마. 기금의 운용·관리 및 관리자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10조, 11조)
- 바.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12조)
- 사. 지원금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13조)
- 아.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14조)
- 자. 관계규정 준용(안 제15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별첨

나. 예산조치 : '22년 당초예산 5억원 편성 계획임. 붙임의 비용추계서 참조

다. 합 의 : 기획실 예산부서와 합의되었음.

라. 기 타

- 1) 입법예고(2021. 5. 10. ~ 2021. 5. 31.) : 제출된 의견 없음
- 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(2021. 4. 12.)
- 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- 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개선사항 없음(2021. 3. 26.)

평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평창군 자활기금을 설치하고,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금의 조성) 평창군 자활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평창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의 출연금
2.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
3. 국고보조금
4. 군 이외의 자의 출연금
5.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
6.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
7. 기금의 운용 수익금

제3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.

1.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
2. 국민기초생활 보장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여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

3.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 지원
4.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
5.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
6.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
7. 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
 - 가.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
 - 나.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
8. 자활사업 연구·개발·평가 등을 위한 비용
9. 영 제26조의4항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(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)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「국민건강보험법」, 「국민연금법」 또는 「고용보험법」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
10. 그 밖에 평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4조(지원대상) 기금의 지원대상은 군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

· 기관·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
1. 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및 영 제3조의 차상위자
2. 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

3.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
4.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·기관·단체
5. 그 밖에 군수가 자활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·기관·단체

제5조(지원신청·변경)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기금을 지원 받은 자가 지원 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6조(자금의 대여) ① 자금의 대여금액은 지원 신청자의 사업규모,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평창군 자활기금 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정한 방법에 따라 군수가 결정한다. 이 경우 타당성 검토를 중앙·광역자활센터 등 자활지원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, 대여이율, 대여한도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.

③ 대여자금의 이자 및 상환기한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율은 군금고의 연체금리 50%이내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.

④ 군수는 시설·장비설치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자금을 대여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.

1.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
2.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내에 사업을

-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
3.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출자금을 목적 이외에 용도로 사용한 때
4. 그 밖에 군수가 정당한 사유로 상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- ⑤ 군수는 기금의 사업자금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, 자활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-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기금의 용자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지방재정법」을 준용하여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7조(사회보험료 지원) ① 군수는 제3조제9호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지원 하는 경우 근로·사업소득 등의 증가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된 가구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종류, 본인 부담분에 대한 지원 비율, 지원기간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.

제8조(이자 차액의 보전) ① 자활기업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보전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이자 차액의 보전 대상 및 보전비율은 자활기업의 사업 내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.

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자 차액을 보전 받는 자활기업이 제6조제4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 차액 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.

제9조(신용보증) 영 제26조의4제7호에 따른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

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 제27조에 따른 의한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.

제10조(기금 운용·관리)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금 운용 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.

1.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
2. 당해 연도 기금 사용계획
3.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②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정을 따로 설치하여 관리·운용한다.

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군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.

1. 금융기관에의 예치 또는 예탁
2. 국채, 공채 그 밖에 유가증권의 매입
3.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금증식사업

제11조(기금관리자)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·운용을 위하여 기금 운용관은 자활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, 기금출납원은 자활 업무 담당으로 한다.

제12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)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

매 회계연도마다 평창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·의결을 받아야 한다.

제13조(지원금 사후관리) ①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 받은 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기금 사용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회계연도 중 사업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기금 사용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제출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금의 사용 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
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,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게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출지원의 경우에는 상환기한에 이르기 전에 대출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.

④ 군수는 자활기금 반납 또는 환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향후 지원금 신청 및 지급과정에서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있다.

제14조(자활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·운영) 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영 제29조제2항 및 「평창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조례」에 따른 평창군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한다.

1.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
2.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
3.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
4. 기금 사용 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사항

5. 그 밖에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사항

제15조(관계규정의 준용) 기금의 운용·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평창군 예산 및 기금회계 관리 규칙」을 준용한다.

제1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 발췌

□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

제18조의3(자활기금의 적립)

①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한다.

□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」

제26조의2(자활기금의 적립)

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적립해야 하는 자활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의 적립금액은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정한다.

②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기금의 적립계좌를 별도로 개설하고 기금을 적립해야 한다.

제26조의3(기금의 재원)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

제26조의4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.

8.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

제26조의5(기금의 운용·관리 등)

① 기금은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운용·관리한다.

②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, 기금재무관,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.

③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·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[붙임]

비용추계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가. 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평창군 자활기금을 설치하고,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나. 제2조 (기금의 조성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평창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의 출연금

2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전제대상	내 용	예산액	산출근거
평창군 자활기금	기금운용 - 저소득층 자활지원에 필요한 자금대여 및 자산형성지원 - 자활실시기관의 기능보강, 자활사업비 등 지원 - 자활사업 연구개발 평가 등을 위한 비용 등	5억	'22년 당초예산 반영

나. 재원조달 방안 : 군 자체수입(지방세)

3. 작성자

작 성 자	평창군 행정지원국 복지정책과 권혁수
연 락 처	(033) 330 - 2150

< 연도별 비용추계표 >

(단위 : 천원)

구 분	1차년도 (2022년)	2차년도 (2023년)	3차년도 (2024년)	4차년도 (2025년)	5차년도 (2026년)	계
세 입	502,500	1,750	1,750	1,750	1,750	509,500
일반회계 전입금	500,000	0	0	0	0	500,000
그 외 수입 (이자 등)	2,500	1,750	1,750	1,750	1,750	9,500
세 출	380,000	30,000	30,000	30,000	30,000	500,000
기금 예치금	350,000	0	0	0	0	350,000
자활 활성화사업비	15,000	15,000	15,000	15,000	15,000	75,000
용자사업 (점포 임대 등)	15,000	15,000	15,000	15,000	15,000	75,000
재원 조달	500,000	0	0	0	0	500,000
의존 재원	소 계					
	보조금					
	지방교부세					
자체 수입	소 계	500,000	0	0	0	500,000
	지방세	500,000	0	0	0	500,000
	세외수입					
지방채						
기 금						
공기업 특별회계						
민간자본						
해외자본						
기타 (채무부담, 민자 등)						